

# 소 장

원 고 1. 김 0 0(000)

1900. 0. 0.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2. • 0 0(000)

1900. 0. 0.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 $\Box$   $\Box$   $\Delta$   $\Delta$   $\Delta$   $\Delta$   $\Delta$ 

1900. 0. 0.생

등록기준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

주소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#### 입양취소청구의 소

## 청 구 취 지

- 1.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20○○. ○. ○. ○○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2. 원고들은 피고의 사촌인 소외 □□□□로부터 피고를 소개받아 입양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○○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아 장래가 유망하므로 원고 김○○가 경영하고 있는 무역업체에서 일을 도와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원고 김○○의 사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입양하게되었습니다.

또한, 피고는 20○○. ○. ○. 원고들과 소외 □□□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미국에서 받은 학위를 보여 준 적이 있었습니다.

- 3. 그런데, 입양 후 피고는 원고 김○○의 회사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동업한 사업에서 진 빚을 정리할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3차례에 걸쳐 원고들이 ○○○만원을 피고에게 준 사실이 있는 바, 원고들은 피고의 행동이 의심스러워 소외 □□□를 추궁하였더니 피고는 ○○대학교와 미국에서 경영학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, 원고들로부터 가져간 돈도 피고의 노름빚을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- 4.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와 소외 □□□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고,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입양 후 알게 되었으므로 입양의 취소를 구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.

## 첨 부 서 류

1.	가족관계증명서	1통
1.	입양관계증명서	1통
1.	주민등록등본(원고, 피고)	각 1통
1.	소장부본	1통
1.	납부서	1통

2000년 0월 0일

원 고 1. 김 O O (인) 2. 이 O O (인)

#### ○ ○ 가 정 법 원 귀 중

	,	5	
제출법원	양부모 중 1인의 보통 재판적소재지 가정법원		
제기권자	<ul> <li>・미성년자: 양부모, 양자,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</li> <li>・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없이 양자: 동의권자</li> <li>・미성년자가 적법한 동의없이 양자: 양자, 법정대리인, 동의권자</li> <li>・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를 하거나 양자: 피성후견인, 성년후견인</li> <li>・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없양자: 배우자</li> <li>・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양친자의 타방</li> <li>・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: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</li> </ul>	(o) }:	
상 대 방	· 양친자의 일방이 제기하는 소는 타방을 상대방으로 하고,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함		
제출부수	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 법 규 민법 제884~897조		
불복절차	· 항소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및 기간	·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내(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)		
비용	・인지액: 20,000원(☞가사소송 및 비송사건수수료표) ・송달료: 당사자수×3,700원(우편료)×12회분		
1. 입양이 제866조 및 제870조 내지 제874조의 규정에 위반한			
입양취소	2. 입양 당시 양친자의 일방에게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		
사 유 지 못한 때			
	3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		

#### ※(1) 제 척 기 간

- 1. 미성년자가 한 입양은 그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때
- 2. 미성년자가 동의없이 양자가 된 경우는 양자가 성년에 달한 후 3월을 경과하거나 사망한 때
- 3.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없이 피후견인을 양자한 경우는 후견의 종료로 인한 관리계산의 종료 후 6월
- 4.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없이 양자를 하거나 양자된 자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의 취소 있은 후 3월
- 5. 부모나 직계존속의 동의없는 양자와 부부공동입양에 위반한 양자는 그 사유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
- 6. 양친자의 일방에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양자는 그 사유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
- 7.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양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 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없음.